상담센터규정 9-1-1

규정번호 9-1-1
제정일자 2003.9.1
최근개정 2024.7.24
개정차수 15차 개정
관리부서 상담센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인교육과 심성개발, 자아성숙, 신앙성숙을 지향하는 우리대학의 설립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센터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등(개정 2023.06.19.)
2. <삭제(2023.06.19.)>
3. 진로·심리 상담 역량개발 요구조사(개정 2023.06.19.)
4. <삭제(2023.06.19.)>
5.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환류(개정 2015.12.15.,2023.06.19.)
6. <삭제(2022.02.21.)>
7. 지역사회 연계 상담 협력사업
8. 각종 자료수집 및 정보의 제공(개정 2015.12.15.,2023.06.19)
9. 상담 운영 관련 분석 및 평가(개정 2015.12.15.,2023.06.19)
10. 기타 목적 달성에 관련된 사업(개정 2015.12.15.)

제3조(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1.01.21.)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01.21.)

제4조(조직) ① 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5.12.14.)

1. 상담전문위원 : 상담심리 관련 교육·연구·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상담실의 상담 및 심리검사 업무지원·분석(신설 2015.12.15.)
2. 상담원 : 상담심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상담 및 심리검사 업무담당(신설 2015.12.15.)
3. 객원상담원 : 상담심리 관련 전문가로서 상담활동 지원(신설 2015.12.15.)
4. 인턴상담원 : 상담심리 관련 전공자로서 상담 관련 실습 참가자(신설 2015.12.15.)
5. 자원봉사상담원 : 상담심리 관련 전공자로서 무보수로 상담활동 지원(신설 2015.12.15.)

② 상담전문위원, 상담원, 객원상담원, 인턴상담원, 자원봉사상담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2.15., 2021.01.21.)

제4조의2(관리감독) 학생지도 및 학생상담에 관하여는 학생지원처에서 관리감독 한

다.(2014.03.01 신설)

제5조(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담센터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담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상담센터의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상담센터의 운영 및 중요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5. 상담센터 프로그램의 조사·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6. 기타 상담센터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2019.06.17)

② 센터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고, 운영위원은 교직원 및 학생 중 13인 이내로 총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학생임기는 재학상태에 따라 조정가능하다.(개정 2020.03.30., 2021.01.21.)

③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신설 2020.03.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신설 2020.03.30.)

제6조(상담센터 이용 및 정보관리) ①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은 상담 참여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특정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다. (조변경 2018.2.5.)

②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이나 학내 구성원의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 및 주변 인물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학생이나 구성원의 동의 없이 정보를 관련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알릴 수 있다.

③ 학생상담 시 녹음 및 기록에 관해서는 해당 학생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상담과 관련된 제반기록(상담기록, 검사기록 및 편지 등)은 상담센터의 전문기록물로 3년 동안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파기한다.(개정 2024.7.24.)

④ 센터 이용 학생이 본인의 기록 열람 및 복사, 정보제공을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이 본인에게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없거나 해가 되지 않는다면 응하여야 한다. 다만, 타인의 사적인 정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정보는 제외한다.

제7조 <삭제(2022.2.21.)>

제8조 <삭제(2018.2.5.)>

제8조(재정) 재정은 대학의 연구보조금과 센터의 수익금 및 교외기관의 연구비로 충당한다.(조변경 2018.2.5.)

제9조 <삭제(2018.2.5.)>

제9조(운영세칙) 센터운영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12.15., 2018.2.5., 2021.01.21)

제10조 (조변경 2018.2.5.)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칙) <2009.2.26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94> <생략>

<95> 학생생활상담센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②·③, 제5조②, 제7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96> - <102>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하되, 201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직제규정) <2013.7.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1> - <30> <생략>

<31> 학생생활상담센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 “학생생활상담센터규정”을 “상담센터규정”으로 하고, 제1조의 “학생생활상담센터”를 “상담센터”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1호~제5호,제7호제9호)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6조제3항)